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05호 2019. 11. 15. (금)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40호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2
- 정선군 조례 제2741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12
- 정선군 조례 제2742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8
- 정선군 조례 제2743호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45
- 정선군 조례 제2744호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52
- 정선군 조례 제2745호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56
- 정선군 조례 제2746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65
- 정선군 조례 제2747호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7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57회 정선군의회(2019. 10.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40호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성별·연령별·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 ③ 군수는 관할 지역 내 인구·면적 등 고려하여 마을(리 또는 반) 단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협의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2. 수탁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4.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갖춘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대표위원 : 읍·면 대표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주민대표위원 : 읍·면 각 리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직능대표위원 : 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자문대표위원 :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자치 외부 전문가
 5.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총원의 10퍼센트 이상
-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 1항 각호의 선정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⑤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

4.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4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② 제1항에 의한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읍·면장을 경유하여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 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⑦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시범 읍·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나. 관련 조문 :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행정과장 유 홍 열

□ 제안이유

가.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 수립에 참여 및 결정하는 방식인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하여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위원 선정 및 주민자치회 지원
- 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협의
- 다.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 반영
- 라. 마을 축제, 기타 교육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영역 주민자치 업무 수행

제257회 정선군의회(2019. 10.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41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시장구역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 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 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등이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에서의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안의 도로 :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3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4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3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물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물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선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3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8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 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9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군수는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2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1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2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 등록 등) ①정부·강원도·정선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의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거래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

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①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군·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의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주차장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료의 80퍼센트

제36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6. 30.>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개정 2013. 6. 11.]

② 법 제2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 6. 11.]

-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시행일 : 2019. 7. 9.]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意的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 2019. 7. 9.]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상인 및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시행일 : 2019. 7. 9.]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기존조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제개선 사례정비 등을 통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경제과장 전 증 표

□ 제안이유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종전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전통시장의 인정(안 제6조~제10조)
- 다.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안 제11조~제12조)
- 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안 제13조~제16조)
- 마.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 제17조~제20조)
- 바.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취소 절차(안 제21조~제28조)
- 사.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안 제29조~제30조)
- 아.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안 제31조~제37조)
- 자. 시장정비사업의 촉진(안 제38조)

제257회 정선군의회(2019. 10.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42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을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로, “정선군·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 를 “정선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 로,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2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2조, 제8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3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선군의회 의장
2.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3. 정선경찰서장
4. 육군 제8087부대 1대대장
5. 정선소방서장
6. 국가정보원 정선군 관계관
7. 제7안보지원대 정선군 관계관
8. 정선군재향군인회장
9. 강릉보훈지청장

③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 정선군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2. 경찰담당간사 :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장
3.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작전과장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동원과장
5. 심리전담당간사 : 정선군 공보업무 담당부서장

④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정선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정선군 민방위협의회

제7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면장 소속으로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상황실의 실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지원본부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은 3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주사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업무담당 주사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읍·면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의 편성 및 인원 등은 읍·면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중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중전의 제3조)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유지와 관련된”을 “유지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참가하는”을 “참가한”으로, “유대강화와 관련된”을 “유대강화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다. 취약지역 대비책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전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만료 전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을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③ 합동상황실은 정선군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책임 하에 운영하고,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동원과장으로 하며, 반원은 군·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u>에 따라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정선군·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선군의회의장 2.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 	<p><u>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u>----- ----- ----- 정선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 ----- 필요----- -----.</p> <p><삭 제></p>

장

3. 정선경찰서장
4. 육군 제8087부대 1대대장
5. 정선소방서장
6. 국가정보원 정선군관계관
7. 제536기무부대 정선군관계관
8. 정선군재향군인회장
9. 강릉보훈지청장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

촉하는 사람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만료 전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 행정과장
2. 경찰담당간사 :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장
3.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작전과장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08
7부대 1대대 동원과장

⑥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정선군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정선군민방위협의회<본조제목 및 전문개정 2011.06.15.>

5.>

<신 설>

제3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선군의회 의장
2.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 3. 정선경찰서장
- 4. 육군 제8087부대 1대대장
- 5. 정선소방서장
- 6. 국가정보원 정선군관계관
- 7. 제7안보지원대 정선군 관계관
- 8. 정선군재향군인회장
- 9. 강릉보훈지청장
- ③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 가.·나. (생략)
- <신설>
 - 다. (생략)
-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

- 1. (현행과 같음)
- 2. -----
- 가.·나. (현행과 같음)
- 다. 취약지역 대비책
- 라. (현행 다목과 같음)
- 3. -----
- 가. -----

의 설치 및 유지와 관련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와 관련된 사항

4. 5. (생략)

<신설>

7.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각호 전부개정 2007.02.15.>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정선군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지원반, 인력·재정지원반, 산업·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8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정선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

----- 유지에 관한 ----

나. -----
참가한 -----
----- 유대
강화에 관한 -----

4.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삭제>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

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만료 전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실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 또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③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읍·면의 실정에 따라 상황요원과 분야별 지원반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신 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

<신 설>

는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협회의의 운영) ① 협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 정선군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2. 경찰담당간사 :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장

3.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작전과장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동원과장

<신 설>

5. 심리전담담당간사 : 정선군 공보업무 담당부서장

④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정선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정선군 민방위협의회

제7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면장 소속으로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상황실의 실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

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지원본부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은 3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주사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업무담당 주사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읍·면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의 편성 및 인원 등은 읍·면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정선군통합방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

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3.03.1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2.23.>>

<신 설>

<신 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삭 제>

제9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 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정선군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책임 하에 운영하고,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동원과장으로 하며,

<신 설>

반원은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
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
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
다.

관계법령

1. 통합방위법

○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⑤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 통합방위법 시행령

○ 제7조(중앙협의회 소집 등)

② 중앙협의회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② 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항을 준용한다.

○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부사항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 및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없음.

4. 작성자

안 전 과 장 김 영 환

□ 제안이유

「통합방위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 활동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회의 구분(정기, 임시) 및 소집시기 규정 (안 제6조)
- 나. 협의회 심리전 담당 간사 추가 (안 제6조)
-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신설 (안 제9조)

제257회 정선군의회(2019. 10.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43호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정선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정선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정선군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선군 각종 행사개최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2.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3. 교통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4.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홍보활동 사업비
 - 3. 그 밖에 선진교통 질서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1.]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본조신설 2012.3.2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 [전문개정 2013.6.28.]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9.7.]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본호신설 2018.11.12.]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관련 조문은 조례 제5조 내용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안 전 과 장 김 영 환

□ 제안이유

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예방 및 교통·기초질서 계도 등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공익행사
봉사에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
고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운영의 내실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나. 조직 구성 및 활동, 사업,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57회 정선군의회(2019. 10.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44호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40만원” 을 각 “50만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의2 중 “2만원” 을 “7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고 및 포상)①·② (생략)	제2조(신고 및 포상)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u>40만원</u>	1. ----- - <u>50만원</u>
2.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u>40만원</u>	2. ----- <u>50만원</u>
3.·4· 5. (생략)	3.·4· 5. (현행과 같음)
5의2. 다른 지역택시 밤샘주차 행위: <u>2만원</u>	5의2. 다른 지역택시 밤샘주차 행위: <u>7만원</u>

관계법령 발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22.]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포상금 인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된 사항으로
관련 조문은 조례안 제2조 3항 내용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안 전 과 장 김 영 환

제안이유

가. 최근 강원랜드 지역 자가용자동차 및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와 타 지역택시의 불법적인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나. 지역내 불법적인 여객자동차운송 영업을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 및 포상금 인상조정 (안 제2조 3항)

제257회 정선군의회(2019. 10.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45호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존 조 례

□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자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15, 2013.07.31.2018.12.21>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 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 3. 검토위원회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과 여비) 검토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

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도지사
-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된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 4.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 5.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 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18.10.25. 시행)에 이후 지자체에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명칭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등 법령 해석의 차이에 따라 행정착오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향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해석 의견 :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나. 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함
-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음

다. 따라서, 「지자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자체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장), 부산광역시(재난대응과장), 대구광역시(자연재난과장), 인천광역시(재난예방과장), 대전광역시(재난관리과장), 광주광역시(재난예방과), 울산광역시(재난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재난관리과장), 경기도지사(자연재난과장), 강원도지사(행정과장), 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남도지사(재난대응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난대응과장)

주무관 변환동 기술서기관 이상혁 재난영향분석 2019. 5. 30. 과장 임재웅

협조자

시행 재난영향분석과-2873 (2019. 5. 30.) 접수 방재과-6276 (2019. 5. 30.)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17-2동 533호

전화번호 044-205-5169 팩스번호 044-205-8935 / byunhd78@mail.go.kr / 부분공개(5)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 상실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

제257회 정선군의회(2019. 10.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46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정선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되,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 3. 농업기계의 운전·조작 및 정비기술 교육
-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장)농업기계 임대사업소장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제6조(임대 대상)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정선군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임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보험업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 중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없다.

1. 임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임대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2. 임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2회 이상 임대 기간을 위반한 경우

제7조(임대 신청 절차)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대로 임대 여부를 결정하되, 1가구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대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와 임대료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 통지를 받은 사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하는 농업기계 조작 및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임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동일한 내용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임대차 계약)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 결과 등을 통지한 이후에 신청인과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농업기계를 임대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인도하거나 반환받는 경우에는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제9조(임대료 등) 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상태, 임차인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를 결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인도전까지 고지서,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임대한 농업기계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임차인인 경우: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2. 재해 복구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 전액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임대료 감면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3.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4.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제12조(농업기계 관리)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수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농업기계임대사업소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업기계 기종 선정

2. 임대료 산정 기준 및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계 임대 업무 담당 과장

2. 농업기술 지원 업무 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정선군의회 의원

나.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농업 및 농업기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기계 임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되고, 서기는 농업기

계 임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4. 1.]

제8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4. 1.]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본조신설 2009. 4. 1.]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침

○ 지원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 등에 임대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 이상 중·장기 임대 가능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음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이모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들녘병경영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인접 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도 임대할 수 있음.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

□ 제안이유

주말 또는 주중을 이용해 관내에서 농업을 종사하고자 하는 도시 농업인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관내에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정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제명)

나. 임대대상자 범위 확대(제6조)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정선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주민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확대함.

다. 계약 및 출고 임차인 안전 사항 규정(제7조)

○ 임차인 안전교육 의무화

라. 임대료 등 납부방법 확대(제9조)

○ 임대료는 출고 전까지 고지서,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방법 추가

마.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제10조)

○ 임대료 반액 면제 대상에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추가

제257회 정선군의회(2019. 10.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47호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선군 군립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군민의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하여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말한다.
2. “군립병원”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정선군 군립병원을 말한다.
3. “군민”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의료재단

제4조(설립)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군립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군의 관할구역에 두되, 그 구체적 위치는 해당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군민의 지속적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군립병원의 관리 운영
-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순회진료 등 공익을 위한 보건사업
- 3. 지역거점 농촌형 공공의료기관의 선정 및 운영 관련 사업
- 4.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 5.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군의 대행사업
- 2. 국가, 도 또는 군의 위탁사업. 다만, 해당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때에 한정한다.
- 3.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군의 사무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의 의료복지 실정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보건의료 기금

제7조(설치 및 구분)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이 조례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그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그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의 조성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적립기금
 - 가. 국가 및 도·군의 출연금
 - 나. 자발적 기부금 및 후원금
 - 다. 재단의 사업 수익금
 - 라. 그 밖의 수입금

2. 운용기금

- 가. 국가, 도 또는 군의 출연금
- 나. 특정사업 목적의 자발적 기부금
- 다. 기금의 이자 수입금
- 라.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적립기금: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2. 운용기금: 다음 각 목의 비용에 충당한다.
 - 가. 재단의 운영비
 - 나. 재단의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제9조(관리·운용)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 2. 기금출납원: 군립병원 지원 업무 담당 주사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부서의 장
 - 가. 예산
 - 나. 보건의료
-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

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료재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1.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 2. 제5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사업
- 3. 제6조 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대부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군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및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출연금의 일부 및 사무로 본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 제 심 사 서

규 제 명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9조(관리·운용) 및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심사항목	심 사 의 견	
관련법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및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정선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조문별 규제	개정(안) 조문별 내용	규제유형
	<p>제9조(관리·운용)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2항의 운용심의위원회는 「정선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정선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심의”</p>	<p>상위법 위반 : 법적 근거 없이 위원회의 통합 운영</p>

심사의견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항 단서의 “심의위원회”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기금별로 설치·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기금별 심의위원회라고 할 것임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함(법제처 2013. 11. 8. 의견 13-0335 제시사례 등 참조)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정선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필요적 자문기관일 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결산, 성과 분석 등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과 달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군의 지역 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건강실태 및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지역 보건의료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서로 다른 기능을 하도록 지방기금법령과 지역보건법령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어, 결국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기능 외에 조례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 다른 기능을 부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 등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9조제3항과 부칙 제3조의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변경(안)	▶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변경(안)	
	당초(안)	변경(안)
	<p>제9조(관리·운용) ① (생략)</p> <p>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정선군 공공보건 의료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2항의 운용심의위원회는 「정선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정선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p> <p><신 설></p>	<p>제9조(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③ (삭제)</p> <p>제0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p> <p>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당연직 위원 : 정선군 예산 및 보건 의료 업무담당 부서장</p> <p>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p> <p>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p> <p>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재단 업무 담당이 된다.</p>

<p>변경(안)</p>	<p><신설></p> <p>(이하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 ~ 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심의"</p>	<p>제0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p> <p>② 그 밖의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p> <p>(이하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 (삭제)</p>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강원정선056									
정책명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정선군								
	부서명	보건소								
	담당자명	김철기	전화번호 033-560-206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0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소)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과 군립병원 운영조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p>○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결과,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2-1(성별 특성) 관련, 아래와 같이 개선의견을 제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는 정선군립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선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정선의료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 제4조에서는 재단의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조례 제4조에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군립병원 운영(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에 대한 보건사업 실시(제2호),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선정 및 운영(제3호)은 정선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임.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군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성별에 따른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필요를 발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정선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조례 제4조제4호를 신설할 것을 권유함. <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참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35%;">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th> <th style="width: 35%;">개선안 (법령 수정안)</th> <th style="width: 20%;">검토사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제4조(사업) 재단은 정선군민의 보건</td> <td>제4조(사업) 재단은 정선군민의 보건</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4조(사업) 재단은 정선군민의 보건	제4조(사업) 재단은 정선군민의 보건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4조(사업) 재단은 정선군민의 보건	제4조(사업) 재단은 정선군민의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의료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u>생애주기별, 성별 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u> 5. (현행 제4호와 같음)	
2			
3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19년 10월 17일 까지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10월 17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전희라/033-560-2316)</p> <p>보건소장 귀하</p>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비용 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단의 사업 : 조례안 제5조
- 재산의 조성 : 조례안 제6조
- 운영재원 등 : 조례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0년 ~ 2024년(5년)
- 대 상 : 정선군립병원
- 추계방법 : 정선의료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자료 참조

나. 추계의 결과

- 2020년~2024년까지 약 2,824백만 원의 지출 예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년도 (2020년)	2차 년도 (2021년)	3차 년도 (2022년)	4차 년도 (2023년)	5차 년도 (2024년)	합계
총 비용(a - b)		284	355	535	724	926	2,824
지출	비용	3,947	4,023	4,209	4,404	4,611	21,194
	소계(a)	3,947	4,023	4,209	4,404	4,611	21,194
수입	편익	3,663	3,668	3,674	3,680	3,685	18,370
	소계(b)	3,663	3,668	3,674	3,680	3,685	18,370

3. 관련 의견

- 연도별 사업 지원 규모가 유동적이므로 비용추계가 변경될 수 있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5년간 총 출연금 : 2,824백만원
- 재단 출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년도 2020년	2차 년도 2021년	3차 년도 2022년	4차 년도 2023년	5차 년도 2024년	합 계
지출 (a)	자 본 금	100					100
	재단 인건비	2,982	3,150	3,328	3,515	3,713	16,688
	재단 운영비	864	873	881	889	898	4,405
	합 계	3,947	4,023	4,209	4,404	4,611	21,194
수입 (b)	직 접 수 익	3,605	3,605	3,605	3,605	3,605	18,025
	간 접 편 익	58	63	69	75	80	345
	합 계	3,663	3,668	3,674	3,680	3,685	18,370
총 비용 [지출(a) - 수입(b)]		284	355	535	724	926	2,824

- 직접수익 = 국고보조금(365백만원)+강원랜드 기부금(2,000백만원)
- 간접편익 = 경영혁신편익+기금운영편익 + 이용자 증가편익 + 진료비 절감편익

※ 강원랜드 기부금 지급이 비확정으로 내년도 운영비 30억 계상요청

작성자 : 보건소장 전 희 자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년도 (20년)	2차 년도 (21년)	3차 년도 (22년)	4차 년도 (23년)	5차 년도 (24년)	계
의존 재원	소 계	365	365	365	365	365	1,825
	보조금	365	365	365	365	365	1,82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84	355	535	724	926	2,824
	지방세	284	355	535	724	926	2,824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해외자본							
기 타 (수입금)		1,014	948	774	591	394	3,721

2. 관련의견

- 정선군 의료재단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기부금, 병원운영수입, 군비로 충당

3. 협의사항

- 기획실 협의

4. 작 성 자

보건소장 전 희 자

□ 제안이유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및 군립병원 운영조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나. 정선군 의료재단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정선군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안 제6조)
- 라. 정선군 의료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정선군 의료재단의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정선군 의료재단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 정선군 의료재단의 공무원 파견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